

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-63호

거제동 40-9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0-9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9일

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사업의 종류	사업명
가로주택정비사업	거제동 40-96번지 일원

2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

사업시행구역 위치	사업시행구역 면적
연제구 거제동 40-96번지 일원	9,211.50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 수 예 정 일 : 2029년 12월 예정

나. 준 공 예 정 일 : 2032년 12월 예정

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조합의 명칭	사무소 소재지
거제동 40-9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	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65번길 51, 4층(연산동)

5. 조합설립인가일 : 2026. 7. 9.
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-	거제동 40-9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	연제구 거제동 40-96번지 일원	9,211.50㎡	-

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 시 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	결정사유
-	거제동 40-9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	연제구 거제동 40-96번지 일원	9,211.50㎡	「반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제9항에 의거 사 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등재코 자 함.

7. 기타 관계도서: 게재생략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
(<https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건축
과(☎051-665-505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